

의안번호	제 906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자	원감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11월 10일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감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6
----------	-----

발의연월일 : 2021년 11월 10일

발 의 자 : 원감회, 연종석, 송미애
윤남진, 이상정, 이상식
이옥규

1. 제안이유

- 언택트(Untact) 문화 확산에 따라 비대면 물류 서비스의 확산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안 제7조)

3. 조례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조례안 예고 대상
- 관련부서 협의 : 농정국 농식품유통과와 협의함
- 비용추계 : 해당 없음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지원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농업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운영 및 이용 사업
2.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사업
3. 농산물 전자상거래 입점상품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사업
4.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사업
5. 전자상거래 농산물 운송 사업
6.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 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 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為)를 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첨부 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사 유

-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해 수반되는 신규 예산 편성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